

의안번호	2211077
의 퇴 인	이해민 의원
회 답 일	2025.7.22.
추계번호	25E34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2조 1,549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11조 2,139억원(연평균 2조 2,4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4⑤)	-21,549	-21,979	-22,419	-22,867	-23,325	-112,139	-22,428

※ 본 추계결과는 추계대상 통신비의 범위를 이동통신비로 한정하고,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세액공제 대상 통신비의 범위 및 소득세 신고자의 통신비 지급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전화(인터넷전화 포함), 이동통신, 인터넷 및 필수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 － (공제율) 지급액의 15%(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급분은 25%) － (공제한도) 2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가 시행되는 2027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동통신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의 세수효과로 설정
 -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통신비를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 이동통신, 인터넷 및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비로 정하고 있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비의 범위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고 있는 이동통신비를 휴대폰 사용자(본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그 외)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이동통신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추계에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는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통신비와 같다고 전제¹⁾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자료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이동통신비를 추정하여 추계에 활용
-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
 - 개정안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그 외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수혜자별로 통신비 지급액을 구분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15%의 공제율 적용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로 나누어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뒤 이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
-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 종합소득자의 총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2년 귀속)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수 및 평균 이동통신비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근로소득자를 총급여규모별로, 종합소득자를 총수입금액 규모별로 각각 구분하고 이들 중 이동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을 국세통계연보(2023년 귀속) 상의 인원 수에 곱해

1)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수 추정

- 개인의 연간 이동통신비 지급액은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을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원 단위로 배분하여 추정
 - － 가구별로 가구 총 근로소득(종합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가구 단위 통신비에 곱해 가구 통신비를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원별로 배분
 -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²⁾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총수입금액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추정치)에 적용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연도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규모별, 총수입금액규모별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추정치)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정
 - － 이동통신비를 수혜자별(장애인 여부 등)로 구분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15%의 공제율 적용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025.3.)³⁾를 곱하여 추계

(2) 추계 결과

□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3년 기준 2조 2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3)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4) 2.3 (2025) 1.9 (2026) 2.0 (2027) 2.0 (2028) 2.0 (2029) 2.0 (2030) 2.0

[표 2]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자,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2023년 귀속 국세통계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 ²⁾	연평균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³⁾	1인당 세액공제금액 ⁴⁾	2023년 귀속 국세통계		세수효과 (억원)
	총급여 인원 ¹⁾				1인당 결정세액 ⁵⁾	총급여 인원(A) 중 종합소득세신고 비중	
	A	B	C	$D = \min(C \times 15\%, 0.2)$	E	F	$G = -\min(D, E) \times B \times (1 - F)$
합계	13,964,590	9,444,060	—	—	—	—	-11,441
1천만 이하	12	9	0.52	0.08	0.83	16.7%	-0
1.5천만 이하	169,973	124,420	0.67	0.10	0.01	40.1%	-8
2천만 이하	806,641	607,186	0.73	0.11	0.06	41.5%	-229
3천만 이하	2,827,082	2,020,298	0.89	0.13	0.19	34.3%	-1,774
4천만 이하	2,364,773	1,624,363	1.02	0.15	0.53	26.6%	-1,831
4.5천만 이하	1,000,025	661,916	1.16	0.17	1.02	22.9%	-886
5천만 이하	884,923	583,898	1.20	0.18	1.41	21.4%	-825
6천만 이하	1,460,623	946,352	1.24	0.19	2.09	20.2%	-1,403
8천만 이하	1,924,293	1,204,099	1.28	0.19	3.63	18.5%	-1,888
1억 이하	1,134,653	742,209	1.49	0.20	6.75	18.1%	-1,216
2억 이하	1,213,735	806,694	1.62	0.20	17.00	23.2%	-1,240
3억 이하	112,513	71,843	1.90	0.20	52.71	37.3%	-90
5억 이하	44,681	34,717	1.90	0.20	101.06	45.6%	-38
10억 이하	15,863	12,325	1.90	0.20	208.84	54.9%	-11
10억 초과	4,800	3,730	1.90	0.20	750.67	72.1%	-2

주: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인원 수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및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총급여규모별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율 및 한도 2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5)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종합소득자,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수입금액 규모	2023년 귀속 국세통계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 ¹⁾	연평균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²⁾	1인당 세액공제금액 ³⁾	2023년 귀속 국세통계	세수효과 (억원)
	총수입금액 인원				1인당 결정세액 ⁴⁾	
	A	B	C	D=Min(C×15%, 0.2)	E	G=-min(D, E)×B
합계	11,481,360	5,569,234	-	-	-	-8,825
8백만 이하	487,251	334,674	0.95	0.14	0.0	-18
1천만 이하	256,943	165,383	0.94	0.14	0.0	-32
1.2천만 이하	258,237	152,210	0.87	0.13	0.0	-59
1.7천만 이하	687,924	439,291	0.85	0.13	0.1	-299
2천만 이하	471,267	266,000	1.06	0.16	0.1	-265
2.4천만 이하	659,597	323,730	1.23	0.18	0.2	-596
3.6천만 이하	1,901,087	868,612	1.17	0.18	0.3	-1,525
4천만 이하	509,119	239,750	1.31	0.20	0.5	-471
4.8천만 이하	848,287	377,266	1.52	0.20	0.7	-755
6천만 이하	923,113	410,544	1.48	0.20	1.1	-821
8천만 이하	1,002,685	445,932	1.58	0.20	1.8	-892
1억 이하	636,429	283,044	1.79	0.20	2.7	-566
2억 이하	1,379,340	613,445	1.44	0.20	5.4	-1,227
5억 이하	906,470	403,142	1.61	0.20	11.2	-806
10억 이하	345,391	153,609	1.80	0.20	22.0	-307
10억 초과	208,220	92,603	1.80	0.20	96.6	-185

주: 1)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수입금액규모별로 종합소득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수입금액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4천만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자 및 4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동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종합소득자 전체에 대해 산출한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인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3) 총수입금액규모별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및 한도 2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4)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인원의 총수입금액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는 2023년 기준 세수효과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자	-12,165	-12,409	-12,657	-12,910	-13,168	-63,309	-12,662
종합소득자	-9,383	-9,571	-9,762	-9,958	-10,157	-48,831	-9,766
계	-21,549	-21,979	-22,419	-22,867	-23,325	-112,139	-22,428

- 소득세의 징주시점을 반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2조 1,549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조 2,139억원(연평균 2조 2,4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4⑤)	-21,549	-21,979	-22,419	-22,867	-23,325	-112,139	-22,428

※ 본 추계결과는 추계대상 통신비의 범위를 이동통신비로 한정하고,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세액공제 대상 통신비의 범위 및 소득세 신고자의 통신비 지급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